

경운대학교 내부감사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내부감사규정 제5조의1에 의거 감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총장을 포함하여 우리대학교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간 호선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5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감사결과 처분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총장이 부의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수당과 교통비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